

의안번호	2204824
의 퇴 인	한창민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6.
추계번호	24D4449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이사 1명을 증원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,000만원(연평균 4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비상임이사 증원 (안 제8조제1항)	4	4	4	4	4	20	4

주: 1. 비상임이사 증원(안 제8조제1항)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는 비상임이사에게 연간 12회의 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제1항(임원)	공단에 두는 임원 중 비상임이사는 7명으로 함 ※현행법은 비상임이사를 6명으로 규정하고 있음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제1항(임원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비상임이사에게 연간 12회의 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증원되는 비상임이사 1명에게 연간 12회의 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
 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, 비상임이사에게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, 즉 이사회 참석 등에 따른 수당, 여비 등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¹⁾
 - 이에 본 추계에서는 연간 12회의 이사회가 개최되고 수당과 실비로 1회당 33만원(=참석수당 25만원+여비 8만원²⁾)을 지급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비상임이사 1명을 증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비상임이사 수(a, 명)	1	1	1	1	1	-
회의 당 지급비용(b, 만원)	33	33	33	33	33	-
추가재정소요 (=a×b×12회, 백만원)	4	4	4	4	4	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47조의11에 따라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따로 지급하지 않으나, 노동이사의 경우에도 비상임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, 즉 이사회 참석 및 안전 검토 등에 따른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
2)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자료에 따르면,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일비 25,000원, 식비 25,000원, 교통비 실비 30,000원(추정)으로 총 8만원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비상임이사에게 연간 12회의 회의참석에 따른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